

◆ 우리 부에서는 『청렴 알리미』를 통해 주요 비위 적발사례를 주기적으로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.

◇ **금품·향응 수수 등 비위사례**

----- 직무관련자로부터 **금품 수수, 금품 제공 등** -----

- 골프 용품 3개를 제공하겠다는 업무 관련자의 말을 듣고, 파우치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 · 제공하도록 요구하고,
- 이를 수령한 직원은 임직원 2명에게 1개씩을 제공하고 1개는 본인이 사무실에 보관, 해당 부서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상급자에게 골프 용품을 전달할 때 동행하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및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를 방관

----- **국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양주선물 수수 등** -----

- 국외 교육훈련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귀국길에 돈을 모아 면세점에서 구입한 양주를 관리자에게 선물로 제공, 수수

-----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**명절선물 수수 등** -----

- 과거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이력이 있는 업체 대표가 택배로 보내온 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수수하고, 해당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신고

----- 특수목적법인의 **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, 관리자로서 이를 승인** -----

- 특수목적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해당 법인의 업무처리와 무관한 부서 회식비, 간식비 등을 결제할 때 사용하였고,
- 부서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해당 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서 회식비 사용 등에 일부 공모하여 사용